

1. 개정이유

현행 만7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확대(아동수당법 개정, 제391회 국회(정기회)의결, '21.12.3. 정부이송)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에 따른 문언 정비(안 제3조)

당초 만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던 것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문언 정비

나. 인용조문 문언 정비 (안 제4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해당 문언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7세 미만”을 각각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 · 내용 · 방법 및 절차 등)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 · 내용 · 방법 및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u>7세 미만</u>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① ----- ----- ----- ----- ----- <u>아동수당 지급 대상</u>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 <u>7세 미만</u> 아동의 보호자: 매년 1월 31일	2. ----- -- <u>아동수당 지급대상</u>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대리인) 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대리인)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 <u>사회복지사업법</u> 」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2. 「 <u>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u> 」----- -----

사람	--
----	----